

## 양돈업등록·허가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건의

일정규모 이상의 양돈업자를 규모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케 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수급조절상 필요할 때에는 생산·사육·출하조절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법이 개정·공포(1984. 8. 2; 법률 제3738호)되었는 바, 이 법의 입법취지는 대기업의 양돈업 참여를 규제하고 기존 대규모 양돈업자의 무제한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농가양돈의 소득원 보호와 양돈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이의 개선방안을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 ■ 문 제 점 ■

1. 개정된 축산법의 시행에 앞서 대상농민에게 양돈업의 등록·허가 절차와 미등록 또는 위법시의 불이익한 점과 처벌 등을 안내하는 행정적 절차와 이 법에 대한 홍보 및 지도가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 발생된 문제를 보면,

가) 현재까지 상당수의 양돈농가들이 개정 축산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신규등록시의 제반제한조치 등으로 미등록 상태에서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그 중 일부 양돈농가는 불법 양돈으로 고발되었음.

나) 합법적 절차에 따라 양돈업 등록을 필하고 매월 사육두수의 증감현황을 시·군에 보고하였으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5년 등록 당시의 모돈두수를 제외한 전 두수를 감축토록 하는 시행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등록두수를 초과한 모돈 1두당 219,750원의 부과금 납부를 고지하고 양돈업의 등록을 취소토록 하는 행정조치는

이 법의 취지와 규모간의 형평의 원칙 및 산업의 자연신장율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다) 현재 양돈업의 신규등록을 신청할 경우,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모돈 50두로 제한함으로써 일부 등록규모 이상의 양돈농가들이 사육규모를 은폐하고 등록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조절을 위한 모돈 감축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등록을 필한 양돈업자만 행정적 규제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있음.

라) 현행 환경보전법상에는 돈사의 경우 1,400 제곱미터 이상에 한하여 폐수배출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시행기관에서는 양돈업의 신규등록시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폐수처리시설 증명서를 첨부케 하는 것은 실상 양돈업의 신규등록을 규제하는 행정조치로 지적되고 있음.

2. 개정 축산법의 시행에 따른 시·군 담당 공무원의 축산법 해석 차이 등으로 시행상의 혼선이 야기되었으며, 각급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의 빈번한 농가방문 조사·확인조치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를 보면,

가) 일부 시·군에서는 양돈업의 등록을 희망하는 대상농민에게 등록을 만류한 바 있어 현재까지도 미등록 상태를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시·군 축정계에 사육 현황을 보고하여 대장에 등재된 모돈의 인정을 확약하였으나, 현재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있어 대상농민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음.

나) 등록 및 허가 양돈업자의 사육두수 조사·확인에 사전 예고도 없이 각급 행정기관(면·읍 단위공무원, 시·군 단위공무원, 도 단위공무원, 중앙부처 공무원)이 합동 또는 개별로 대상농가를 빈번히 조사확인함으로써, 양돈농민은 이를 관계기관의 지나친 간섭으로 생각하는 불평이 있음.

다) 등록두수에서 단 1두만 초과하여도 감축명령을 내리며 이를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확인하는 등의 시정조치와 대상 농가

의 명단을 마스크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는 양돈장의 현장사정과 양돈농민의 최소한의 인간적 체면을 전연 고려치 않은 과잉조치로 지적되고 있음.

3. 등록양돈농가의 규제에 비하여 대규모 허가업체는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으로 인하여 허가당시보다 오히려 사육두수를 증식시킨 업체가 있으며, 입법당시 양돈업의 허가 상한두수를 모돈 1,000두로 제한하는 규정과 취지에 반하여 초과두수를 인정하는 것은 대규모 허가업체의 특혜조치라는 지적과 불평이 있음.

가) 모돈 500두 이상의 35개 대규모 양돈장 중 34개 업체가 별도의 종돈업 등록을 필하고 순종모돈을 허가모돈 두수에서 제외받음으로써 실제 사육규모를 늘릴 수 있는 규정은 대규모 허가업체에 대한 특혜조치라는 지적이 있음.

나) 이 법 시행당시 허가업체의 초과두수 감축기간을 시행일로부터 2년간으로 정하고 대기업을 분산소유 양돈장에 대한 행정조치는 이로부터 다시 1년간을 허용하는 조치는 등록규모의 단시일내 감축명령에 비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조치라는 불만이 있음.

## ■ 개선방안건의 ■

### 1. 양돈업 등록의 현실화와 감축유도

#### 가. 미등록 양돈업자의 등록유도

개정 축산법에 의한 양돈업 등록 안내를 받지 못하였거나 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미등록 상태에 있는 양돈농민을 고발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처함으로써, 양돈경기가 안정된다 할지라도 이는 농민의 불

만을 유발시키며 정부시책의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역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미등록 양돈업자의 등록을 유도하며 모돈감축 등 생산조절의 실제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건의한다.

1. 미등록자는 현재 사육중인 모돈을 사실대로 등록토록 하고 이를 인정함으로써 등록과 감축의 실제 목표를 실현토록 하는 조치를 요망

함.

2. 미등록업자가 신규 등록시 사실대로 등록을 하도록 한 다음, 기존 등록업자의 감축율보다 높은 비율(20~30%선)의 감축명령 조치로서 규모를 조절토록 하는 조치를 요망함.

3. 신규 등록시 생산자 단체의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여 가급적 업계주도의 생산조절 활동을 지원토록 하는 조치를 요망함.

(시·군 안정위원회에서 공무원 입회하에 자율적으로 확인토록 함)

4. 신규 등록시 사육두수 및 축사면적에 관계없이 축산폐수 유출 방지시설 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는 일부 시행기관의 행정조치를 완화시켜 미등록자의 등록을 유도토록 하는 조치를 요망함.

#### 나. 등록 양돈업자의 모돈두수 인정

1. 등록을 필한 양돈업자가 분기별로 시·군에 신고하여 시·군 대장에 등재된 모돈두수를 인정토록 하는 조치를 요망함.

2. 등록양돈업자는 분기별로 시·군에 사육현황을 신고함으로써 등록 사항의 변경을 인정토록 하는 조치를 요망함.

3. 생산조절이 필요할 시 대장에 등재된 모돈중 일부 두수를 감축토록 하되 감축사육 기간을 명시토록 하여 줄 것을 요망함.

## 2. 생산조절 시책의 수립과 감축의 지도 확인

생산조절 시책 등은 정부가 수립하여 시달하고 생산조절 활동과 감축지도 확인은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행정적 지원을 요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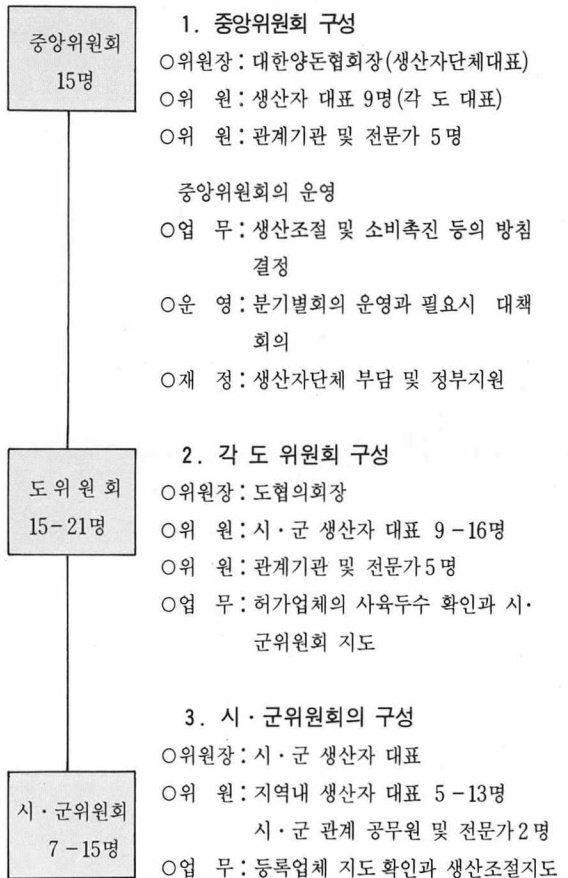
### 가. 시·군 담당 공무원의 교육과 생산조절 활동 지도

전국 각 시·군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하여 개정 축산법 시행에 따른 시행 통일을 위하여 해당 농민과의 견해차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고, 행정기관에서는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조절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요망

#### 양돈경영안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생산조절 방침의 결정

○등록 및 허가업체의 사육두수 확인



함.

#### 나. 업계의 자율적 감축 확인 지원

각급 공무원의 빈번한 농가 방문 및 사육두수 조사확인에서 오는 제반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가 앞의 표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지도하고 지원함으로써, 관민 협조체가 수립되도록 하는 조치를 요망함.

### 3. 허가업체의 규제

가. 개정축산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허가업체의 사육두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는 조치를 요망함.

1. 허가업체는 허가모돈(F<sub>1</sub>)의 30% 이내의 종돈을 사육토록 조치.
2. 동일인의 양돈업의 허가 300두 이상의

종돈업 등록을 불허토록 조치.

3. 종돈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돈업만을 영위할 경우 1,000두를 상한선 조치.

### 4. 양돈업 등록의 의미 정립과 감축 효과 거양 방안

양돈업의 등록은 양돈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로 정립되어야 하며 양돈업을 등록한 자는 허가 규모 미만의 돼지를 사육하는데 하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되, 매월 사육두수의 보고를 의무화 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를 확인토록 한 후, 과잉생산이 우려되어 감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할때 등록업자의 신고두수에서 적당한 비율의 감축을 명함으로써 생산조절의 성과가 거양되도록 하는 행정적 조치를 요망함.

## 현 황

### 1. 축산법 개정 공포 및 시행일

○축산법 개정공포-1984. 8. 2 법률 제3738호  
축산법 시행일-1985. 2. 2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축산법 시행령 개정공포-1985. 4. 24  
(대통령령 제 11689호 전문 개정)  
시행령 시행일-1985. 4. 24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985. 4. 27농수산부령 제 930호  
시행규칙 시행일-1985. 4. 27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2. 양돈업 등록 허가 현황

구 분	업 체 수	모 돈 수
등 록	635개소	66,227두
허 가	35 "	36,674두
계	670 "	102,901두

### 3. 모돈감축 현황 (87. 1. 31)

구 분	85.11.25현재 초 과 업 체	86.11.25- 87.1.7 감 축 실 적	
		87.1.31현재 감 축 실 적	
등 록	업체수	196개소	133개소
	모돈수	5,679두	4,298두
허 가	업체수	2개소	1개소
	모돈수	100두	17두
계	업체수	198개소	134개소
	모돈수	5,779두	4,315두

#### 4. 정부의 '87돼지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추진현황

근거	지시내용	시행기관	처리사항
중축27420-1124 (86. 7. 18)	관련규정 미숙지에서 오는 무등록 무허가 축산업 영위 방지	시·도지사	
중축27420-1715 (86. 11. 7)	○신규허가 불가 ○신규등록은 돈사의 신축 허가억제를 통하여 규제 ○미등록·무허가 양돈업체 고발조치(축산법 제 73, 74조)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중축27420-1743 (86. 11. 12)	○일제조사 실시('86. 11. 15현재) 등록·허가 대상상의 모돈수를 초과한 업체에 대하여 사육조절 및 감축명령	시·도지사	
중축27420-1758	○양돈업 등록·허가업체 실사	시·도지사	

(86. 11. 17)	○양돈장 2 개소 이상 분산 소유업체 (허가·등록업체) 특별 관리	시·도지사	
중축27420-1836 (86. 12. 4)	○신규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취소규모는 모돈 50두로 하고 초과두수는 1개월이내 감축 ○종돈업은 일반검정 결과 확인된 두수를 종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일반모돈에 포함시켜 감축	시·도지사	
중축27420-1917 (86. 12. 24)	○시설규모에 비해 두수를 줄여 등록된 업체 등의 무이행 불성실 업체에 대하여는 등록두수 초과 모돈감축을 강력히 이행시킬 것	시·도지사	
농림수산부 고시제 87-3호 (87. 1. 24)	○'87년도 모돈의 초과사육 부과금액 모돈두당 219,750원		

## “과연! 육종의 명문”



**마니돈**  
MANIDON

공인중돈능력검정 최우수돈 페난트

**여전히 전국 1위**

농장

서울

의정부

13km

마니돈

1km

하송우리

600m

포천

10km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천호**는 최상의 작품만 만드는 명문으로 기억되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분양 중**

**A.C.D라인(D.Y.L) 및 PS(F.)**



**마니육종**

서울·도봉구 공릉동 617-18  
 전 화 : 972-2907-9, 8101-2  
 종돈장 : 경기도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280  
 전 화 : 포천 (0357) 32-1103